

투자설명서 변경 주요내용

1. 투자신탁의 명칭 : 브이아이 실적 포커스 30 증권 투자신탁 1호[채권혼합]

2. 변경시행일 : 2023년 07월 21일

3. 변경사유

- ① 투자신탁 결산에 따른 갱신
- ② 실제 수익률 변동성 변경(6.97% → 5.30%)
- ③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
- ④ 소득세법 개정사항 반영
- ⑤ 일반사무관리회사명 변경

4. 변경사항(투자설명서)

| 구분 | 변경 전 | 변경 후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|
| 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| | |
| 5.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| - | (업데이트) |
|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| <추 가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증권대여 :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가. 수익률 증진 :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,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합니다. · 나. 기타 효율적,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 · 증권차입 : 효율적 운용, 보유자산의 시장위험 헤지, 환매 대응, 유동성 확대,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차입을 진 |

| | | |
|---|--|---|
| | | 행할 수 있습니다. |
|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다. 기타 투자위험 | <추 가> | 증권대차 거래 위험 |
|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| ※ 실제 수익률 변동성(실제 연환산 표준편차 :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) : 6.97% | ※ 실제 수익률 변동성(실제 연환산 표준편차 : 최직근 결산일 기준 과거 3년간 수익률 변동성) : 5.30% |
|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| - | (업데이트) |
| 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| <p>[세액공제]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 (지방소득세 포함) -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(괄호 추가)</p> <p>단, 2020년 1월 1일 납입액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과세기간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의 50세 이상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로 함 -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3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 (지방소득세 포함)(2017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)</p> <p>[분리과세한도] <추 가></p> | <p>[세액공제]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중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 (지방소득세 포함) - 해당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(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)</p> <p><삭 제></p> <p><삭 제></p> <p>[분리과세한도] - 연금소득이 1,200만원 초과하</p> |

| | | |
|---|--|--|
| | | <p>는 경우에 대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 또는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. (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)</p> |
| | <p>[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] <추 가></p> | <p>[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] 가입자가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6조제1항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</p> |
| <p>14.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나. 과세 (5) 퇴직연금제도의 세제</p> | <p>① 세액공제 당해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 +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)과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___ 공제합니다.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 +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)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(괄호 추가)</p> <p>다만, 2020년 1월 1일 납입한 금액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의 50세 이상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 +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)</p> | <p>① 세액공제 당해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 +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)과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___ 공제합니다.</p> <p>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 +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)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(공제한도 상향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)</p> <p><삭 제></p> |

| | | |
|---|--|--|
| | <p>과 연 900만원 중 적은 금액 적용</p> <p>-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)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(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 +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)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.2% (지방소득세 포함)</p> | <p><삭 제></p> |
| | <p>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</p> <p>- 다만, 연금 수령 시에도 사적 연금액(퇴직연금+개인연금)이 연간 1,200만원 이하인 경우 「분리과세」로 선택 가능합니다.</p> | <p>③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</p> <p>- 다만, 연금 수령 시에도 사적 연금액(퇴직연금+개인연금)이 연간 1,200만원 이하인 경우 「분리과세」로 선택 가능하며, 연금소득이 1,2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종합소득 결정세액 또는 16.5%(지방소득세 포함)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. (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)</p> |
| <p>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</p> | | |
| <p>1. 재무정보</p> | <p>-</p> <p><기업공시서식 반영></p> | <p>(업데이트)</p> <p>·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</p> <p>· 주식의 매매회전율</p> |
| <p>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</p> <p>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</p> | <p>-</p> | <p>(업데이트)</p> |
| <p>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</p> | | |
| <p>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</p> <p>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연결 재무내용</p> <p>라. 운용자산 규모</p> | <p>-</p> | <p>(업데이트)</p> |
| <p>4.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</p> <p>가. 회사의 개요</p> | <p>신한아이타스(주)</p> | <p>신한펀드파트너스(주)</p> |

끝.